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8)

1. 의안명 :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1. 3.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1. 5.
- 라. 위원회 심사 : '98. 2. 20.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가. 제안이유

- 남외동 병영 삼일아파트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업내용, 위.수탁의 정의 및 위.수탁에 따른 협약사항, 운영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감독등을 규정함.

다.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4. 검토보고요지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병영삼일 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운영권을 중구청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기위해 사회복지관의 위, 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며, 다만, 본 조례(안)중 제6조 중 단서조항의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임대기간으로 한다”를 본 건물의 영구적 사용제한과 기한 명시 부분을 절충하여 “위탁 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임대기간내에서 협약으로 정한다”로 일부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년월일 : 1997. 12.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울산광역시가 '94. 10. 21부터 '97. 10. 20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29-2번지 일원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단지내 사회종합복지관을 건립,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보건사회부훈령제568호(89. 6. 9)]에 의거 단지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반시설물을 우리구에 인계 해음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과, 위·수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법적근거조항

- 사회복지법사업법 제28조(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사무의 위임)

3. 주요내용 :

-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지관 운영의 위탁 및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
- 복지관의 운영비등에 관한 사항등

4. 제정조례안 : 볼임

5. 관계법령 발췌(사본) : 볼임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며,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병영삼일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

제4조 (복지관의 운영) 복지관에서는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가. 가정문제 종합상담
 - 나. 취업·부업안내(무료직업안내소 운영)
 - 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 관리
2. 아동복지사업
 - 가. 아동선도 및 가정교육
 - 나. 어린이 기능교육
 - 다. 육아보육교실 운영
3. 청소년복지사업
 - 가.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나. 청소년 독서실운영

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4.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나.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

5. 장애인복지사업

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나. 재가 장애인 서비스

6. 지역사회 복지증진

가. 주민 사회교육

나. 주민 편의시설 제공

다. 자원봉사자 양성

라. 후원자 개발

7. 기타 저소득 주민의 복지에 관한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제6조 (위·수탁의 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운영의 위·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한다.

단,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비등) ①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사항에 대한 구 관계직원의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비영리법인이 아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증·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0>